

결손금이 발행한 중소기업

4-6.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



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(소득세)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(소득세) 환급

지원 대상

- 법인세(소득세)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(소득세)를 신고한중소기업

지원 내용

-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(소득세) 한도 내에서 환급
-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분만 환급



유의사항

-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
-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

절차 및 제출서류

-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-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관련 법령

- 「법인세법」 제72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10조
- 「소득세법」 제85조의 2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49조의 2

용어 해설

- 결손금 :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

적용 사례

- 기업현황(A법인-중소기업)
 -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: 2017년 1월 1일
 - ② 2025년(제9기) 각사업연도소득금액(△결손금) : △50,000,000원
 - ③ 2024년(제8기) 법인세 신고내용
 - Ⓐ 과세표준 : 120,000,000원
 - Ⓑ 산출세액 : 10,800,000원
 - Ⓒ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: 8,000,000원
- A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?
 - ① 소급공제로 인한 2024년 산출세액의 감소액

$$2024년\ 산출세액 - \{(2024년\ 과세표준 - 소급공제\ 결손금) \times 2024년\ 법인세율\}$$

$$= 10,800,000원 - \{(120,000,000원 - 50,000,000원) \times 9\%$$

$$= 4,500,000원$$
 - ② 2025년 환급한도액 : 10,800,000원 - 8,000,000원 = 2,800,000원
 - ③ 2025년 환급신청액 : $\text{Min} [①, ②] = 2,800,000원$